

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

1992. 6. 9 제정

2003. 10. 10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내규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원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연구기금(이하 “연구기금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3.10.10)

제 2 조 (연구기금 운영위원회) ①연구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수연구기금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재무처장, 연구처장, 연구처부처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무처장이 된다.

③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(개정 2003.10.10)

제 3 조 (연구기금의 운영 및 연구비 등의 재원) ①운영위원회에서는 연구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연구기금의 증식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본교 재무처장에게 위탁한다.

②연구비 및 연구기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연구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액의 범위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(개정 2003.10.10)

제 4 조 (연구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 규정)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신설 2003.10.10)

부 칙(1992. 6. 9 제정)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연구비를 받은 교원에게도 이 내규를 적용한다.

부 칙(1994. 6. 20 개정)

이 내규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8. 6. 1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

부 칙(2001. 4. 6 개정)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10 개정)

이 규정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